#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7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한민수·박용갑·이연희

박상혁 • 이해식 • 이정문

황 희 • 박해철 • 복기왕

홍기원 · 소병훈 · 임오경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

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 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.

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,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,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.

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·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.

이에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, 임면은 국회가 하고, 방송통

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.

### 주요내용

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,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6672호), 「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668호),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669 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위원회의 심의・의결 사	제12조(위원회의 심의・의결 사		
항)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	항-)		
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결			
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	<u>&lt;삭 제&gt;</u>		
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			
3.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	<u>&lt;삭 제&gt;</u>		
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			
4.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・	<u>&lt;삭 제&gt;</u>		
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			
<u>사항</u>			
5. ~ 29. (생 략)	5. ~ 29. (현행과 같음)		